

제205회 안산시의회(임시회)

시 정 질 문

윤태천 의원

제205회 안산시의회(임시회)

시 정 질 문

윤태천 의원

본오1동, 본오2동,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.

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, 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첫 번째로 안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.

1986년 화성시로부터 반월동 편입, 1994년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대부동 편입, 1995년 시흥시로부터 수암동 편입 등 행정구역개편으로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2. 9. 3일 현재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은 418개소, 연장 133km, 면적 7.199km², 추정사업비는

약 3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경기침체를 이유로 어려운 재정여건만을 탓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재산권 침해와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도시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. 이에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.

첫째, 우리시는 2008년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기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사업이 차일피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,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는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인천비, 복지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지난 5년간의 우리시의 가용예산현황, 기 행정절차를 완료 사업중 미집행중인 사업현황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둘째,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

보고토록 함에 지난 2012. 11월 당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. 작년 11월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천6백9십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바 2013. 8. 31일 현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불황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난은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볼 때 이러한 재정여건이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 등 실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셋째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과거 20년이었던 실효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이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취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향후 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다음은, 윤태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
『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』에 대하여 답변
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- 필수 경비를 제외한 지난 5년간의 가용예산 현황과 행정절차 완료 사업 중 미집행 사업 현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
 - 2012년 11월 의회에 보고한 사항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바 2013. 8. 31. 현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과 향후 재정여건이 반영된 집행이 가능한 연차별 추진계획
 -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방안
-
-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하게 되지만, 사회·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경될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수정·보완하는 연동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며,
 - 최근 국내·외 경기불황, 특히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및 정부의 건축정책 등으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,

- 시설물 관리유지비 증가,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사회복지비 증가 등 법적·의무적·필수 경비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따라서 최근 5년간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연간 1,660억원 정도이며, 2012년 11월 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의해 보고한
-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기준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미집행 사업은,
- 도로 14, 주차장 21, 공원 3, 체육시설 2개소 등 총 40개 시설이며,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 6개소와 공원 2개소로 이중 도로 4개소는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.
- 둘째,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3,690억원이며, 2012년과 2013년에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258억원으로

- 2013년 8월 31일 현재 확보된 예산은 125억원이며,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3억원을 추가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.
- 확보된 예산은 현재 공사진행 중이거나 편입토지 등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,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하여 미집행 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세 번째,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 미집행 사유가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당분간은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
-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수혜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, 수시로 각각의 시설을 검토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.

- 또한, 전년도 11월에 의회에 보고한 미집행 시설 중 해제 천고한 3개 시설에 대하여는 천고의견을 수용하여 해제한바 있으며,
- 향후 의회 보고시마다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뿐 아니라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, 의회에서 해제천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미집행 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